

전공 관련 현장실습 운영 필수

-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운영 목적 및 원칙) 2.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한다.

1. 개요

가. 실습기간: 2021. 6. 28.(월) ~ 8. 31.(화) / 기간 내 4주 또는 8주 실습 진행

나. 실습 진행 및 관리: 제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jejunu.ac.kr>)

다. 참여대상

구분	내용	비고
학생	제주대학교 재학생	
실습기관	제주대학교 가족회사, 도내·외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	
<p>※ 실습 운영 및 실습지원금 지급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C+사업단: LINC+사업 참여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 (본부)현장실습지원센터: 제주대학교 1~2학년 재학생, LINC+사업 비참여학과 재학생 		

2. 2021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

가. 운영절차

	2021.4.~6.	5.24.~6.16.	6.7. ~ 6.25.	6.28. ~ 8.31.	7.23. ~ 8.31.
대학	▶ 현장실습 공고	▶ 학생-기업 매칭	▶ - 사전교육 실시 - 상해보험 가입 - 전공 연관성 확인	▶ [실습 진행] 방문 점검 진행	▶ [실습 종료] 실습지원금 지급
학생	▶ - 참여 신청 - 수강 신청	▶ 5.24.~6.17. 선발여부 확인	▶ 6.7. ~ 6.25. - 사전교육 참여 - 학과 서류 제출 (현장실습신청서)	▶ 6.28. ~ 8.31. [실습 진행] 업무일지 작성	▶ 7.23. ~ 8.31. [실습 종료] - 결과보고서 제출 - 만족도조사 참여 - 학점 취득
실습 기관	▶ 4.27.~6.16. 참여 신청 (기업지원금 지급 필수)	▶ 5.24.~6.17. 학생 선발	▶ 6.28. ~ 8.31. [실습 진행] 출석부 작성	▶ 6.28. ~ 실습 시작 후 14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가입서류 필수 제출)	▶ 7.23. ~ 8.31. [실습 종료] - 기업지원금 지급 - 만족도조사 참여

나. 2021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구 분		학점	실습기간	비 고
전공	학과(전공)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학과별 상이함	학과별 상이함	학기제, 계절제
일반 선택	현장실습1	3	4주 이상	학기제, 계절제
	현장실습4	6	8주 이상	학기제, 계절제

다. 운영 일정

구 분	추진기간	주요내용
<실습기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	2021. 4. 27.(화) ~ 5. 17.(월)	< 1차 신청 기간 > -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실습 운영 내용 입력
	2021. 5. 18.(화) ~ 6. 16.(수)	< 2차 신청 기간 > -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실습 운영 내용 입력 - 학과추천 실습 수요조사 등록
<참여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	2021. 5. 18.(화) ~ 6. 16.(수)	1. 수강신청: 하영드리미 /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2. 실습기관 선택: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2) 실습기간 확인, 실습기관 선택
실습기관-참여학생 매칭	2021. 5. 24.(월) ~ 6. 17.(목)	- 실습생 선발 - 실습생 실습기관 및 실습기간 확정
참여학생 명단 (매칭명단) 안내	2021. 6. 21.(월) ~ 6. 25.(금)	- 참여학생 소속 학과에 안내 · 전공 일치 여부 확인
오리엔테이션	2021. 6. 7.(월) ~ 6. 25.(금)	- 참여 학생 기본소양 교육 및 행정사항 안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 안전교육 및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 온라인 또는 개별 사전 교육 실시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2021. 6. 28.(월) ~ 8. 31.(화)	- 최종 협의 된 실습기간에 따라 실습 진행 - 4주 또는 8주 실습 진행
현장 방문지도	2021. 6. 28.(월) ~ 8. 31.(화)	- 현장실습생 현장지도 및 원격 점검 - 현장실습기관 애로사항 확인 - 취업 연계
만족도 조사	2021. 7. 19.(월) ~ 9. 5.(일)	-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실습 만족도조사 실시
실습종료	2021. 7. 23.(금) ~ 8. 31.(화)	- 실습생 학점 취득 - 실습지원금 지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현장실습 실습지원금 지원

가. 실습지원비 지급 내용

지급기관	지급 금액	내 용
LINC+	800,000원 / 4주	- 4주(20일) 단위로 지급하며, 취업 또는 상해 등으로 조기 종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실습기관	실습기관 별도 기준	- 참여학생에 대해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 지급방법: 학생에게 직접 지원

※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취소하거나 기타 재난 상황,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실습 일정 변경으로 실습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실습지원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나. LINC+사업단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참여 학생	도 내	실습비 - 실습일수 × 40,000원	LINC+기준
	도 외	실습비 - 실습일수 × 40,000원	LINC+기준
		숙박비 - 10,000원/1일 × 실습일수 - 당일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지원	
		교통비 - 실습 참여학생 왕복 항공료 외 교통비 실비 지원	150,000원 이내 지원
	상해보험가입		- 실습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
방문지도 출장비		- 실습 방문지도, 실습 업체 관리 및 발굴 출장비 - 관내 출장(제주시): 일비 10,000원(4시간 이상 20,000원) - 관외 출장(서귀포시): 일비, 식비 지원 - 도외 출장: 출장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학생지원: 실습지원금은 4주(20일)단위로 지원하며, 특별한 사유로 실습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일할 지원

다. 기타 사항

- 1)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며 실습지원금을 지급함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6조 2항
 -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

4. 현장실습학기제 유의사항

가. 참여대상별 의무사항

구분	의무사항
학생	- 학생의 전공 관련 분야의 실습기관에서만 실습 진행 가능 - 실습 진행 전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사전 교육) 참여 - 실습기업(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이 완료되었을 때 실습 최종보고서와 주간보고서,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실습 종료 7일 이내에 소속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가입 증명서(취득자 명부) 제출 · 고용노동부고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시행일(2018. 9. 11.) 이후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대학생까지 확대 · 가입방법: 근로기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 · 미가입 시 과태료 및 현장실습 참여 불가 등 불이익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비영리법인/단체 인 경우 실습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사항 안내 및 안전 교육, 인권 보호 - 현장실습 참여 학생 관리 및 학생 출석부 등록, 학생평가서 작성 - 실습생의 적합한 부서 배치 및 실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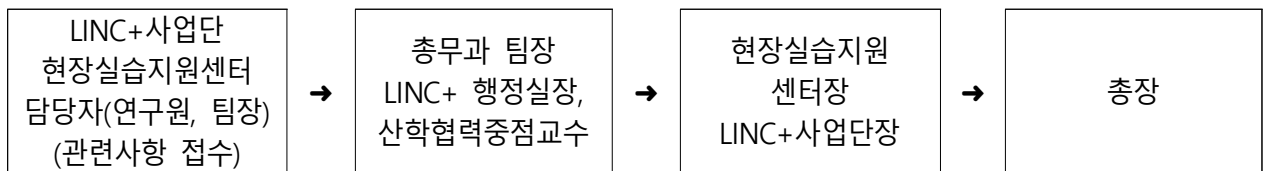
나. 현장실습 운영 원칙

구분	내 용
실습기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실습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운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8시간, 연속 4주 이상 운영하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실습기관에서 결정한다. - 학생이 조기 취업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5.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

가. 보고 체계

- 1) 코로나19 관련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학 관련부서 및 학과(또는 지도교수)에 알림
- 2) 관련부서 및 대학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나. 행정조치

- 1) 현장실습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해당 기업 실습 즉시 중단 및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실습생 모니터링

- 2) 실습 참여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름
- 3)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 sms(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발생 상황 안내
- 4)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에 따름

다. 학점 인정

1) 재택현장실습 진행

-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 허용
- 해당학기 현장실습 기간의 1/4기간 동안은 재택현장실습 운영 가능

* (재택현장실습 인정요건)

- ① 국가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응기준이 필요할 때
- ② 실습기관이 재택현장실습을 학교에 요청하고 구체적인 운영 및 학생 관리방법 (재택현장실습 신청서)을 학교에 제출

2) 현장실습의 5분의 4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과에 학점 처리 요청

3) 5분의 4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 대체 교과 개설 및 교과목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이수(U)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

⇒ 수강신청 교과목 환불기간이 이후에는 학사과에 증빙을 첨부하여 공문을 통해 수강신청 취소 또는 변경 협조 요청

라. 비대면 방문점검 가능

1) 대학(교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담부서 등)에서는 전염병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지도/점검을 원격으로 실시 가능함

2) 현장실습 방문지도/점검을 원격으로 실시할 경우 원격 화상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빙자료(사진 등)를 통해 실시 내역을 입증해야 함

⇒ 방문지도보고서 작성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마. 지원금 지급

1)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될 경우(감염 또는 자가격리 등) 실습한 기간 동안 일할 계산 (1일 40,000원)하여 지원금 지급함

6. 문의: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64-754-3125, 4416